가상자산에 대한 영업의 징표 적용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영업의 징표(badges of trade)는 토큰 처분이 수익적 성격인지 판단하기 위해 IRAS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부동산 및 주식 사건에서 익히 알려진 것들입니다. 거래의 대상, 보유 기간, 유사 거래의 빈도, 자산에 대한 부가 작업, 매각 당시의 사정, 동기, 자금 조달 방법이 그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결정적이지 않으며, 가이드는 각 사건이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1]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면 이 징표들은 특유의 색채를 띠게 되며, 아래 표가 이를 보여 줍니다.

징표	영업을 시사하는 지표	투자를 시사하는 지표
거래의 대상	수익이 없는 토큰, 매각 목적으로 매수	스테이킹 수익이나 거버넌스를 위해 보유하는 토큰
보유 기간	수일 또는 수주, 높은 회전율	수개월 또는 수년, „hodl“ 행태
빈도	연간 수백 건의 거래, 봇, 차익거래	몇 차례의 매수와 매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징표	영업을 시사하는 지표	투자를 시사하는 지표
부가 작업	마켓메이킹, 적극적인 디파이(DeFi) 운용	지갑에 수동적으로 보유
자금 조달	증거금, 파생상품, 차입한 스테이블코인	자기자금
취득 시 동기	문서로 확인되는 단기 이익 의도	장기적 확신, 트레저리 분산
조직	트레이딩 데스크, 시스템, 인력	없음

1년에 두 번 이더를 매수하고 3년에 한 번 매도하는 싱가포르 개인은 투자자이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 개의 거래소에 걸쳐 차익거래 봇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개인은 회사가 없더라도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이익은 section 10(1)(a)에 따른 영업소득으로서, 또는 적어도 (g)호에 따른 소득적 성격의 이득으로서 과세됩니다. 단발성 투기에 관한 영국 판례인 *Leeming v Jones* [1930] AC 415 및 *Marson v Morton* [1986] 1 WLR 1343은 지금도 소득세 심판원에서 인용됩니다. 이 판례들은 사정이 그렇게 가리킨다면 잘 계획된 단 한 번의 투기적 매수도 „영업의 성격을 띤 모험(adventure in the nature of trade)“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2] 스위스에서는 같은 질문이 회람 제36호(Circular 36)의 세이프하버 기준으로 답해지며(제G편 제II장 참조), 이는 싱가포르의 사실관계 및 정황 기준보다 스위스 개인투자자에게 훨씬 예측 가능한 지위를 제공합니다.

실무 메모

IRAS가 검토하기 전에 징표를 미리 갖추어 둘 수 있습니다. 서면 투자 정책, 장기 보유분을 결코 거래하지 않는 콜드월렛으로 분리하는 것, 각 처분의 사유 기록, 차입금 사용 회피는 모두 투자를 시사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1년 동안 적극적으로 거래했다면,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미결제 포지션이 자본자산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득 시의 의도입니다. 나중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변경으로 문서화하고, 그 날짜에 자산을 별도의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

1.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s*, 제2판, 2026년 1월 30일, 지급형 토큰의 처분에 관한 절(영업의 징표,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른 평가). ↩
2. Leeming v Jones, 영국 귀족원, 1930년, 및 Marson v Morton, 영국 고등법원 형평부(Chancery Division), 1986년. 본문 인용 참조. 싱가포르에서의 „adventure in the nature of trade“ 개념에 관하여는 Income Tax Act 1947 s. 2(1)의 „trade“ 정의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